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Phone : +82-70-8799-8336
Fax : +82-70-8799-8319
E-mail : songwb@krs.co.kr
Person in charge : Song Woobeen

No: 2023-IMO-03_Rev.1
Date : 2023.10.30

제목: 선박재활용협약(HKC)의 준수를 위한 고려사항 (2025.06.26 발효 예정)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해체시 유해물질로부터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선박 해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된 국제협약입니다. 또한, 동 협약은 적용대상 모든 선박들에 대하여 유해물질목록의 작성 및 본선비치를 요구하며, 선박재활용시설들 또한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동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해당 협약 비준국이 최소 15개 회원국 이상
2. 비준 국가의 총 선대규모가 전 세계상선 선대규모의 40% 이상
3. 지난 10년 동안 각 비준국의 연간 최대 재활용된 선복량의 합계가 비준국 전체 선복량의 3% 이상

2023년 6월 26일 방글라데시와 라이베리아의 추가비준을 통하여 해당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음에 따라, 2025년 6월 26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사항과 상세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사항 및 적용

1) 적용대상

- 500GT 이상의 국제 항해하는 모든 선박¹⁾
- 당사국²⁾의 관할권 하에 있는 선박재활용시설

1) 적용 예외: 군함, 해군 보조함 또는 국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정부의 비상업적 용도로만 운영되고 있는 선박

2) 당사국이란 협약을 비준한 국가를 말한다.

2) 적용 시기

협약의 발효일자 이후 아래의 구분으로 적용 시기를 정함

(1) 신조선

- 신조선은 다음의 선박을 말한다.

- 협약의 발효일자 이후(2025년 6월 26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 또는
-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 거치 또는 동등한 건조단계가 협약 발효 6개월 이후(2025년 12월 26일 이후) 이루어지는 선박; 또는
- 협약 발효일 30개월 이후(2027년 12월 26일 이후)에 인도가 이루어진 선박

- 신조선은 설계, 건조단계에서 유해물질목록(IHM) Part I을 작성해야 함. 또한, 인도 시점에 승인된 유해물질목록(IHM) Part I 및 IHM 증서³⁾(또는 적합확인서)를 본선에 비치해야 함.

(2) 현존선

- 신조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 협약의 발효일자 이후 5년(2030년 6월 25일) 이내 또는 선박이 재활용되기 전(더 빠른 경우) 승인된 유해물질목록(IHM) Part I 및 IHM 증서(또는 적합확인서)를 본선에 비치해야 함.

2. 유해물질목록 Part I 유지관리 및 최신화

1) 일반사항

- 선주는 기계나 장비 또는 구성요소가 새로 추가되거나, 선박의 수리 또는 개조 시 유해물질목록(IHM) Part I을 최신화 하여 관리해야 하며, 선주 또는 관리사는 이를 위한 절차 수립 및 관련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증서 이서를 위한 임시(또는 정기)검사 전에 동일한 부품이나 코팅 등이 설치 또는 적용되지 않는 한, 모든 신규 설치 항목에 대한 물질신고서(MD, Materials Declaration) 및 공급자 적합확인서(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제조자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본선에 비치해야 함

2) 유해물질목록 개발을 위한 2023 지침서 채택

(1) IAFS(선박 유해 방호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협약 개정사항에 기존 유기주석화합물에 대한 규제에 추가하여 시부트린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고, 2023년 01월 01일 발효됨.

3) 선박의 기국이 협약을 비준했을 경우 만기 증서(Full term)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준하지 않았을 경우 적합확인서(SOC)를 발급받아야 함

※ 라이베리아 국적선의 경우 2025년 6월 26일 전까지 만기 증서(Full term)를 발급받아야 하며, IHM 증서는 EU Reg No.1257/2013의 규정을 포함한 통합된 하나의 형태로 발행됨. (라이베리아 기국지침 MARINE OPERATIONS NOTE 06/2023 참조)

이에 따라, MEPC 80차에서 개정된 2023 지침서 (Res.MEPC.379(80))가 채택되었으며 개정된 지침서를 고려하여 유해물질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 최신화해야 함

*주요 변경사항: 시뷰트린(Cybutryne)을 유해물질목록에 포함

(2) 선주(또는 전문공급자⁴)는 시뷰트린 적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⁵ 또는 샘플링을 통해 선체, 외부 부품, 표면의 외부 코팅층에 기준치 1000mg/kg 이상의 시뷰트린 포함여부를 확인해야 함

3. 사례별 IHM 증서 또는 적합확인서 발행

1) 신조선

(1) 신조선의 유해물질목록 Part I은 조선소에서 작성하며, 선주는 승인된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준비하여 주관청이나 RO(위임기관)에 의해 최초검사 수검 후 IHM 증서 (또는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2) 조선소는 선박의 설계 및 건조 중에 2023 지침서(Res.MEPC.379(80))에 따라 제조자로부터 물질신고서 및 공급자 적합확인서를 수집하여 작성해야 함. 이때, 물질신고서에 기준치 (Threshold value) 1000mg/kg 이상의 시뷰트린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현존선 (IHM 적합확인서(SOC)를 보유하지 않은 선박)

(1) 선주는 협약의 발효일자 이후 5년 (2030년 6월 25일) 이내에 승인된 IHM Part I을 준비하여 주관청이나 RO에 의해 최초검사를 받고 IHM 증서 (또는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2) 현존선의 유해물질목록 Part I은 우리 선급에 등록된 IHM 전문공급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함. 승인된 IHM 전문공급자 목록은 우리 선급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다음의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함

http://e-mesis.krs.co.kr/KeyService/Supplier/En/WKS_CorpAddress_List.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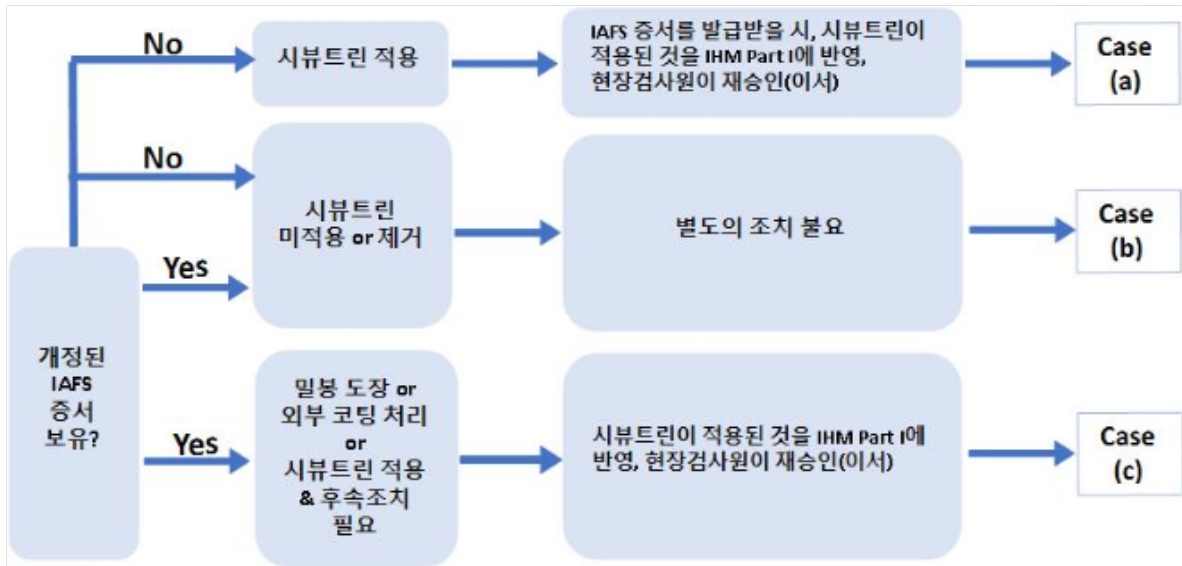
3) 현존선 (IHM 적합확인서(SOC)를 보유한 선박)

(1) 선박의 기국이 협약을 비준했을 경우 만기 증서(Full term)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준하지 않았다면 적합확인서(SOC)를 현행 그대로 유지함

(2) IHM 적합확인서(SOC)를 증서로 발행할 시, 협약의 발효일자 (2025년 6월 26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화물선안전구조증서(SC)에 대한 정기적 검사 시 완료하는 것을 권고함

4) 우리 선급에 등록된 IHM 전문공급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함. 단, Liberia, Marshall Islands 국적선의 경우, 기국이 직접 승인한 전문회사가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작성해야 함.

5) 증빙자료: 시뷰트린에 대한 제한치를 만족한다는 제조자가 발급한 제품선언서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오시스템에 대한 자료



<IAFS 증서관련 순서도>

(a) 개정된 증서 양식으로 IAFS 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시뷰트린이 적용된 선박

- 시뷰트린의 방오도로 사용금지에 관한 IAFS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협약 개정안이 2023.01.01 발효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가장 가까운 임시 또는 정기적 검사 시 개정된 증서 양식으로 발행하고 있음. 선주는 IAFS 증서를 발급받을 시, 시뷰트린이 적용 되었을 경우 IHM Part I에 반영하고 현장 검사원에게 재승인(이서) 받아야 함

(b) 방오시스템에 시뷰트린이 미적용 되었거나 시뷰트린이 제거된 선박

- 별도의 조치 불요

(c) 방오시스템에 시뷰트린이 적용되어 밀봉도장, 외부 코팅 처리된 선박, 후속조치가 필요한 선박

- 선주는 시뷰트린이 포함된 것을 IHM Part I에 반영하고, 가장 가까운 임시 또는 정기적 검사 시 현장 검사원에게 재승인(이서) 받아야 함
 - 시뷰트린이 제거된 경우, 해당내용을 반영한 IHM Part I을 현장 검사원에게 재승인(이서) 받아야 함

4) EU 국적선, EU 항구에 기항/묘박하는 제3국적선

협약의 발효일자 (2025년 6월 26일) 이후에도 EU 회원국 국적 선박, EU 항구에 기항/묘박하는 제3국적선박은 기국의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IHM(EU) 증서 또는 적합확인서를 그대로 유지함
EU SRR관련 기술정보([2020-ETC-04 링크로 이동](#))를 참고

4. IHM 최종검사

선박이 재활용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검사를 말하며, 선주는 최종검사 전까지 승인된 유해물질목록(IHM) 통합본 (Part I, II 및 III⁶⁾) 과 승인된 선박재활용계획서⁷⁾를 본선에 비치해야 함.

선주가 운항중인 선박의 폐선을 결정하게 되면, 선박을 해체하기 전에 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선급에 IHM 최종검사를 신청해야 함. 선박재활용준비증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선박재활용시설로 인도되어야 함.

선주 또는 전문공급자는 유해물질목록 Part II 및 Part III 작성 시, 선박을 재활용시설에 인도할 때까지 운항 상 폐기물 및 재고품의 양이 변경되는 것을 예상하여 작성해야 함.

선박은 당사국 주관청 또는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인가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만 처리되어야 함.

5. 권고사항

신조 이후,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작성하기 위한 물질신고서 및 공급자 적합확인서의 부재로 인해 유해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샘플링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는 많은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모됨. 따라서, **신조 시 물질신고서 및 공급자 적합확인서를 수집하여 유해물질목록(IHM) Part I 작성할 것을 권고함**

6) 유해물질목록 Part I: 선박의 구조와 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목록

유해물질목록 Part II: 운항 중 발생한 폐기물의 목록

유해물질목록 Part III: 재고품 목록

7) 선박재활용계획서: 선박재활용계획서는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작성하며, 선박재활용시설 당사국 주관청의 승인이 요구됨

동 기술정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업무팀(convention@krs.co.kr): 일반적인 문의사항
- 법령업무팀(statutory@krs.co.kr): 한국적선 선박 관련 문의사항
- 환경배관팀(piping@krs.co.kr): IHM Part I, II 및 III 도면승인 관련 문의사항

배부처: 검사원, 선주, 조선소, 제조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